

## 서 울 특 별 시

우100-744 서울특별시 종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(02)731-6656 / 전송(02)731-6956

문서번호 세정 13415-

시행일자 1995. 11. 09.

(경유)

수신 내부결제

참조

취 급		시 장	
보 존	5 년		
국 장	전 결	/	
과 장		법무담당관	세무지도과장
계 장			
기 만	김태호		협조

제목 시세감면조례개정안 입법예고

1. 내무부 세제 13400-343('95. 11. 2)와 관련입니다.

2.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이  
스유하고 있는 보청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만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는 것을 정신지  
체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의 보청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 
여

3.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 
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세사무처리규칙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  
니다.

첨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입법예고(안) 1부. 끝.

(제 2 안)

수신 공보1담당관(법무담당관)

제목 시세감면조례개정안 입법예고(안) 시보 게제의뢰(송부)

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제1항(제2항)에 의거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 
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서울시 시보에 게제하여  
주시기 바랍니다. (송부합니다)

첨부 입법예고안 1부. 끝.

세 정 과 장

1-1

205

195

# 공 고(안)

서울특별시공고 제147호

##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입법예고

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 
회지를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5년 11월 15일

서울특별시장

### 1. 개정취지

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보행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만 자동차세를 면면하고 있는 것을 정신지체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의 보행용 또는 생활활동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강면하려는 것입니다.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정신지체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대하여도 보행용 또는 생활활동용으로 사용하는 2,000㎠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함.
- 나. 장애인 본인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,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면제함.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12월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16절지를 세워서 작성)를 서울특별시장(참조: 세장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등
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세정과(731-6656~9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